



환경보전협회의 위상정립의 방향

I. 머릿말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의 전개과정을 역사적으로 볼 때, 몇 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초기는 1962년부터 1977년까지의 경제성장우선주의의 철학이 지배했던 기간이다. 제2단계는 1977년부터 1987년까지의 기간으로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조화하되 아직도 성장지향적인 조화주의에 머무는 단계이다. 제3단계는 1988년을 기점으로 하는 환경보전지향적 조화주의이다.

이와 같은 환경정책의 방향전환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환경 의식의 향상이며, 경제성장의 정도, 환경오염의 상황, 생활수준의 향상, 환경전문능력의 향상 등 여러 가지의 요인이 밀접하게 작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정책은 환경입법 및 환경행정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다.

우리 환경정책의 환경보전지향적 조화주의로의 전환의 표지로서 가장 뚜렷한 것은 환경입법의 분법화방침에 따른 환경6법의 제정과 환경청의 환경처로서의 격상과 그 장의 국무위원으로서의 지위 부여이다. 환경청의 이와 같은 변신은 우리 나라 환경정책의 현저한 변

구연장 / 경희대 법대교수
한국환경법학회부회장

신을 말해 주는 것임에 의문이 없다.

그런데 환경청의 환경처로의 변신과 환경입법의 확충과 함께 환경행정기능상의 재조정 및 개혁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함께 지금까지의 환경보전협회가 어떤 위상을 지니고서 어떤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여야 할 것인지를 재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환경보전협회가 그간 환경보전법과 그 역사를 같이해 왔으면서도 환경보전법이 그랬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람직한 위상을 확립하지 못했었고 그 기능을 다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II. 환경정책의 전환을 둘러싼 제반상황의 변화

우리 나라가 바야흐로 지금까지의 환경정책을 전환하지 않을 수 없는 제요인 내지 필요성에 부응하여 어떤 모습으로 환경정책의 전환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기업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는 곧 환경보전업무의 민간적 차원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보전협회에 바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1. 환경정책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제요인

첫째, 환경문제의 심각화, 다양화 경향과 예측불가능성이다. 1962년 이래 성장과 개발에 가치를 편중시킨 국가기본정책의 특성 때문에 우리의 환경문제는 날로 현저화되면서 누적되어 왔다. 현저한 경제성장과 함께 생산과 소비의 급증 및 기술개발에 따른 새로운 물질의 양적·질적 변화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환경문제까지 야기시키게 되었다. 예컨대, 염화불화탄소(CFCs)의 오존층파괴, 산성비, 석면(asbestos) 오염 등이 그것이다.

둘째, 국민의 환경의식의 향상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홍보, 교육 또는 실제의 경험을 통하여 일반국민들의 환경의식은 현저히 향상되어 왔다. 또한 국민 일반의 생활 수준의 향상은 보다 나은 질의 환경에의 욕구를 가속화시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세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민주화의 요청이다. 특히 1987년 이래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민주화의 요청은 국가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시민의 의사가 반영될 것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참여와 분권의 요청과 함께 환경문제에 관련한 시민의 참여와 반대는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

네째, 정부 및 기업의 환경보전투자능력의 향상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국제수지상의 흑자화에 따라 정부는 물론 기업도 재정능력의 기반이 정착을 보기 시작함에 따라 환경보전능력도 향상되었다. 따라서 종전처럼 명시적·묵시적으로 허여했던 기업에 대한 환경규제 완화의 재량적 한계는 더욱 좁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일부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환경투자는 기업주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기업의 환경보전을 위한 투자의 양과 폭을 점증시키지 않을 설득력있는 이유를 제시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2. 환경정책의 전환 방향

환경정책의 지도이념은 특히 경제성장과의 관계에서 볼 때, 경제성장우선주의, 경제성장·환경보전조화주의, 환경보전우선주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조화주의는 경제성장지향적 조화주의와 환경보전지향적 조화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1962년 이래 경제우선주의가 절대적으로 지배해 왔으며, 1977년부터 조화주의, 그것도 경제성장지향적인 조화주의의 기운이 엿보이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특히 국제수지의 흑자화와 함께 환경보전지향적 조화주의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바야흐로 요청되는 환경정책의 전환의 기본이념도 이 환경보전지향적 조화주의의 일 따름이다. 이러한 정책전환과 함께 추진될 것이 예상되는 대책방향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환경규제의 강화이다. 환경규제의 강화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전개될 수 있다. (1)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2)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강화, (3) 특별대책지역제의 실시확대, (4) 총량규제의 실시, (5) 배출부과금제의 강화, (6) 처벌규정의 강화 등이다.

둘째, 환경피해구제의 확보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환경오염의 축적은 바야흐로 환경피해의 전국적 확대를 가져오게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그 구체의 확충을 위한 분쟁 또는 운동이 적극화될 것이 예측된다. 정부도 비실효적인 환경보전법상의 임의분쟁조정제도를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닌 강제조정제도로서 확충하기 위한 제도정비에 노력해 왔다. 이의 실현을 위하여

입법으로 구체화된 것이 이번에 제정된 환경오염피해 조사분쟁조정법이다.

세째, 환경행정의 민주화이다. 환경행정의 민주화는 오늘날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민주화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서, 시민의 환경정보에의 접근 확보와 환경행정 의사결정 과정에의 시민참여기회의 확대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환경보전법상 불이익처분을 받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청문제도가 이미 도입되어 있지만, 제일 먼저 환경영향평가절차상에 주민 참여의 기회가 확대·도입된 것이 바로 좋은 예이다.

네째, 환경투자의 강화이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하여는 환경보전목적의 시설, 장비, 기술개발, 요원양성, 교육에의 투자가 증가되어야 할 것이 불가결하다. 이러한 투자는 공공부문은 물론이거니와 사기업체에서도 강화 내지 활성화할 것이 요청된다.

다섯째, 환경행정기능·기구의 조정·정비이다. 환경문제의 효율화를 위하여는 정부내 수개의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일부 환경행정기능을 통합하고, 환경처로 하여금 법정부적 환경정책을 종합·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환경정책의 계획화·종합화를 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3. 기업의 대응 방안

위에서 본바와 같이 불가결하게 전환될 것이 예측되는 환경정책들은 기업측으로 볼 때, 한편 환경행정에의 참여와 의견제시의 기회를 부여해 주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 환경규제비용과 피해구제비용의 지출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것이 명백해진다. 이에 대한 기업측의 자세전환 내지 대응이 불가피하게 된다.

첫째, 바야흐로 기업은 인식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아니될 때가 된 것 같다. 지금까지 기업은 정부의 수출 위주의 경제성장우선주의에 힘입어 환경규제나 피해구제에 큰 지출없이 또한 저임금정책에 힘입어 기업성장과 자본축적을 해온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이제 노사분규와 함께 임금에의 지출이 증가하듯이 환경규제에도 지출을 증가시키지 아니하고는 견디어내기 힘든 때가 오게 된 것 같다.

공공부문측에서도 환경투자가 지극히 소극적이었지만, 지금까지 기업측에서도 환경오염방지시설에의 투자를 최소한으로 하려는 것이 기업의 일반적 자세였다.

그러나 이제는 노사분규와 관련하여 임금에의 지출을 증가시키지 않을 수 없듯이, 환경 규제를 위하여도 지출을 증가시키지 아니하고서는 견디어내기 힘든 때가 오게 된 것 같다. 기업은 환경규제투자에 대한 자금까지의 사고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아니될 것으로 본다.

둘째, 환경규제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기업측의 환경규제비용의 절감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환경오염방지시설투자비나 그 운용비의 절감이었다. 따라서 안가의 불완전한 방지시설의 설치나 방지시설의 비정상가동이 비일비재했던 사실이 이를 입증해 준다. 그러나 제조공정기술의 개선과 오염방지기술의 새로운 개발은 환경규제비용을 절감하는 가장 합리적이고도 장래지향적인 방안이다. 아울러 새로운 기술의 신속한 보급·활용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 요청된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에게 특히 권장하고 싶은 것은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및 이용이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공동방지시설에 의존했을 때 환경규제비용이 단독의 경우에 비하여 3분의1이하로 절감된다고 하고 있다.

세째, 환경피해구제에 대비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지금까지처럼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쟁방간의 화해에 의한 해결이 불공정하다는 점을 시정할 수 있는 환경오염피해조사분쟁조정법을 통한 분쟁의 조정·재정등이 내년부터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앞으로는 건강피해에 대한 보상청구 혹은 소송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했다 하더라도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있어서라. 결국 적절한 환경투자와 정상기동이 필연적으로 요청된다 할 것이다.

네째, 공해추방운동, 고발, 상품불매운동에 대비하여야 한다. 시민들의 환경의식의 향상과 민주화경향과 함께 앞으로 주민들의 공해반대, 추방운동이나 고발은 더욱 가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절한 환경투자와 정상기동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것이 중요한 일임에는 의문이 없다.

다섯째, 보조금제도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아울러 그 확충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인정된 보조금제인 환경오염방지투자에 대한 응자나 조세감면을 최대한으로 활용함으로써 일시적인 투자규모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언제든 갚아야 하기 때문에 웅자마저도 기피한 기업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특히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재삼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여섯째, 준조세적 성격의 지출을 불식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준조세 또는 비공식적인 정치자금으로 비교적 대규모의 기업이 지출한 금액은 그간의 임금문제는 물론이거니와 환경투자를 위하여도 홀륭한 성과를 가져다 주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들린다.

일곱째, 기업측의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그간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거의 행동을 보여 주지 아니한 것으로 비쳐진다. 앞으로는 기업은 환경오염방지의 기술개발, 환경투자효과 및 비용의 연구, 환경투자유인책의 강화요구는 물론, 환경규제의 강화에 대하여도 기업은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고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III. 환경보전협회의 발전과정과 문제점

1. 협회의 성격

환경보전법상의 환경보전업무는 위낙 그 종류와 범위가 넓다. 따라서 행정기관 아닌 기구의 활동을 통하여 한편으로는 환경행정기구(환경청)의 환경대책의 수행을 조력케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사업자를 지원·보조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계몽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환경보전협회를 두되, 이를 법인으로 하고 협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환경보전법 제61조에 두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환경보전협회를 1978년 10월 창설하였다.

환경보전협회의 설립에 즈음하여 협회의 성격 내지 위상은 (1)환경청의 보조기관, (2)사업자의 이익보호 대변기관, (3)중립적인 조사연구기관, 또는 (4)이들 중 몇가지를 복합하는 기관 중 어느 하나로 정립할 수 있었다.

그런데 1978년 설립된 환경보전협회는 (1)전문조사 연구기관적 성격, (2)사업자의 이익보호기관적 성격 및 (3)정부의 대행보조기관적 성격을 골고루 겸비한 복합적 성격의 기구로 설치되었다. 이와 같은 조직철학하에 설치된 환경보전협회는 기능의 활성화를 통하여 환경보전의 일익을 담당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복합적

조직원리가 저마다 역기능을 함으로써 그 누구도 만족시켜줄 수 없는 기구로 될 수도 있다.

2. 협회의 문제점

설립당초의 조직철학 자체에서부터 복합적인 가능성 을 안고 출발한 환경보전협회는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경제성장위주의 정책에 밀려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정적 확보도 기할 수 없었다. 환경청의 설치 이전의 협회는 보건사회부로부터도 냉대를 받았던 기구였었던 것이었다. 따라서 협회의 조직당시의 이상은 처음부터 실현될 수 없었으며, 급기야는 조직이 반불구화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안고 있었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의 취약성은 결국 다른 어떤 재원확보의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방법은 사업자로부터의 회비징수에 의한 재원확보, 자체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재원확보, 경제인단체등으로부터의 재원보조 등을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어느 하나도 독자적인 재원확보의 길을 열어주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처음부터 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협회장으로 하는 등 대한상공회의소에 의탁하는 신세를 지게 되었다. 어쩌면 사업자의 이익보호 내지 기술지원이라는 면에서 보면 환경보전협회의 상공회의소와의 접목은 나름대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한편, 자체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재원확보는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원초적으로 지난하였다. 환경청의 설치후 사업의 업종은 확대해왔으나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조차 할 수 없었다.

협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기술·정보 지원의 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확보방안으로서 결국 회원들로부터의 회비에 상당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환경보전법의 개정을 통하여 당연회원의 속적 증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것 역시 1981년과 1986년의 법 개정에서 실현되지 못했다.

그리하여 1989년에 나타난 것이 협회원의 회비의 대폭적인 인상이었다. 이것은 지금까지 회비면제대상이었던 사업자들은 물론 현재까지 회비를 납부해온 회원들로부터도 적지 않은 반발을 야기시키게 되었다. 협회의 현재의 서비스는 인상된 회비와 균형을 잃고 있다는 것이 그 주된 이유이었던 것 같다.

결국 협회는 조직당초에 의욕했었던 그 어느 기능도 제대로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만 것이다. 법 제상 환경처장관의 감독을 받고 있지만, 운영자금증정 부터 부터 할당되는 것은 극소액에 지나지 않는다. 사업자들로부터 회비에 의한 운영자금을 얻으면서 사업자를 통제하기도 쉽지가 않은 것이다.

환경보전협회의 이러한 불완전하고도 기형적인 위상과 모습은 우리 환경정책의 반영 바로 그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IV. 환경보전협회의 위상 정립의 필요성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서는 협회의 목적을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홍보등”으로 함과 함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를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한 자”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협회의 회원의 숫자 확보를 위한 숙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환경청의 환경처로서의 승격에 즈음하여 이번 기회에 협회의 위상도 재정립되지 않으면 아니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지극히 불투명한 위상과 디목적적 기능은 확립·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확인하면 정부대행기관으로서의 기능, 연구조사기관으로서의 기능, 사업자의 이익보호·지원기관으로서의 기능 모두를 다 활성화할 수 있는 체제의 정비·확충을 도모할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필요성을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1. 환경행정기능의 다양화·복잡화에 따른 분업 필요성

환경행정기능의 다양화·복잡화는 날이 갈수록 현 저해지고 있다. 따라서 제한된 행정능력으로 이 광범위한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하려다가 가칫하면 주요한 핵심기능의 자연 혹은 사각지대를 야기시킬 우려가 없지 아니하다. 따라서 주요한 환경규제기능이 아닌 지원, 지도, 보조등의 업무는 가급적이면 환경보전협회에 이관시키되, 이를 감시·감독하면 될 것으로 본다.

2. 환경행정의 민주화·자율규제확대의 필요성

오늘날 행정의 민주화·자율화의 요청은 지방자치의 확대를 가져오는 한편, 환경행정 업무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자율규제의 범위를 넓히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역시 일정한 범위의 환경관련의 지도·지원·보조업무는 이를 환경보전협회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지원·지도행정의 확대경향에 따른 필요성

오늘날의 행정은 반드시 강제적인 수단에만 의존하지 아니하고 비강제적인 지도·지원행정의 방법이 더욱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영역의 환경영정책업무는 행정규제기관 자체에 의하여서보다 산하 반관반민의 기구에 의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V. 환경보전협회의 위상정립의 방향

1. 기능의 확충

환경행정기관에 의한 법적·강제적 수단에 의하는 것보다 오히려 설득, 지도, 정보제공, 자발적 오염억제에의 유도 등과 같은 비강제적 수단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인 경우도 적지 않으며, 민주적 이념에도 적합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이를 행하는 것보다 비정부적 기구가 이를 행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는 이 점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협회의 기능 확립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협회의 기능 중 가장 중점적인 기능으로 정립할 것은 홍보, 기술보급, 정보공급의 기능이라고 본다. 아울러 기업지원에 관한 정부대행기관으로서의 기능도 중요시된다. 따라서 연구조사기능이나 기술개발기능은 환경연구원이나 다른 연구기관에 맡기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얻어진 기술·정보를 신속히 보급함을 그 주요 기능으로 함이 기대된다.

협회의 교육·훈련기능도 질과 양에 있어 교육대상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보다 전문적인 교육·훈련은 환경연구원의 체제를 정비하여, 예컨대 환경연수원을 설치하든가 하여, 그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회의 교육·훈련은 홍보·계몽적 차원의 광범위한 것이 적절하지 않을가 싶다.

그리고 사업자들의 자율통제가 아닌 기업규제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오히려 시대역행적인 것이 된다. 배출시설허가업체가 당연회원이 되면 이들 업체에 대

한 기술적·정보적 차원의 기여 및 서비스가 특히 중요시되는 것이지, 이들을 정부에 대신하여 규제 내지 통제하는 것은 자율규제가 아닌 한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금까지 행해오지 아니하던 기능이지만 앞으로 관계부처의 협의등을 거쳐 새로운 환경보전협회의 기능으로 재고해볼 가치가 있는 것은 (1)환경관리기사보수 교육신청 및 수학기관지정전의, (2)수입방지시설용기 자체 관세감면업무수임, (3)협회직원의 자율지도원제도의 도입, (4)환경эм블레임제정제도의 도입, (5)환경관련기기등에 대한 품목별 추천품 선정 등을 들 수 있다.

2. 회원확보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자 전원이 환경보전협회의 기본회원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당연하다. 왜냐하면 이들은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주는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함으로써 그 존재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비록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한다 할지라도 사회에 대한 유해물질의 배출에서 기인하는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 니기 때문이다.

배출시설허가업자가 기본회원이 되어 스스로 침해하는 환경을 회복하고 개선함에 앞장을 서야 할 책무를 짐으로써 환경보전협회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환경보전협회의 기본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도 역시 배출시설허가를 받은 사업자이기도 하다. 규모별로 당연회원과 임의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 대안이 있진 하지만, 오히려 규모가 작은 업체가 더욱 협회의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역시 전배출시설업체를 당연회원으로 하고, 회원의 회비는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이외의 환경관련업무를 담당하거나 종사하는 기타 관심있는 법인이나 개인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3. 재정적 기반의 확보

연혁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의 협회의 불투명한 위상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의 취약성에 그 주된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협회의 재정확보를 위한 각종의 자구책의 강구는 협회의 확고한 위상정립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사업자에의 이익·기여에 대하여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회비로 사업자금에 충당하는 것은 협회의 기간회원이 사업자인 점에서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협회의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가 되는 국민 및 기업에의 홍보·계동업무는 그야말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보다 과감하고도 적극적인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요청된다. 지금까지의 정부의 재정지원은 협회의 자금자족에 맡긴거나 다름없는 성질의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정도의 재정지원을 하면서 감독권을 강화하는 것은 문제점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점진적이긴 하지만 그간에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및 자가측정의 대행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물적 장비를 갖추어오면서 쌓은 경험을 살려 보다 공정하고 모델화된 측정대행과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조직 및 시설의 확충·강화

그 동안 협회의 기구도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왔으나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하기 짹이 없다. 더구나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아직도 거리가 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제한된 기능만을 수행하기 위하여도 협회의 인적·물적 구성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충·강화하여야 할 것이 요청된다.*